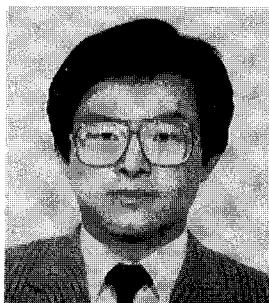


비업무용 부동산과 세금Ⅲ

권성수 <공인회계사·동림회계법인>



Ⅱ.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

5.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내용

1) 비업무용 부동산이 유지관리비 손금 부인

-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·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손금부인하게 된다.
- 취득부대비용(취득원가에 포함되므로 원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)
- 감가상각비
- 재산세, 종합토지세, 토지초과이득세 등
- 수선비
- 보험료
- 유지·관리를 위한 전기료등 각종 사용료 및 공과금
-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처분시에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비업무용 해당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 부인액은 처분과 더불어 손금추인되는 결과가 된다.

2) 지급이자 손금부인

- 비업무용 부동산 및 비업무용 동산(서화, 골동품 등)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이자 중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은 손금부인하게 된다.

$$\text{비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}^{\textcircled{2}} \\ \text{--지급이자}^{\textcircled{1}} \times \frac{(\text{총차입금을 한도로 함})}{\text{총차입금}^{\textcircled{2}}}$$

① 지급이자

- 위 산식에서 지급이자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한 사업년도에 발생한 지급이자 총액을 의미하므로 현금지출된 것 뿐만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미지급 이자는 포함하고 기간 미(未)경과 이자는 제외한다.
- 지급이자에 포함 : 차입금 이자 및 사채이자
- 융통어음 할인료

- 사채할인 발생치금 상각
- 금융리스료

- 지금이자에서 제외 :
- 상업어음 할인료
 - D/A 이자, 유산스 이자
 - 지급보증수수료
 - 운용리스료

② 총차입금

-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의 매일 잔액에 의한 적수를 의미하며 지금이자에서와 같이 선순위 이자 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차입금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.

- 차입금에 포함 :
- 금융리스, 미지급금
 - 융통어음할인액
 - 매출채권담보, 팩토링 금융

- 차입금에서 제외 :
- 상업어음 할인액
 - 연불매입채무
 - 금융기관의 수신자금
 - 이자부담이 없는 미지급금

③ 비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

- 앞서 살펴 보았던 비업무용 부동산과 다음에 해당하는 비업무용 동산의 매일 잔액에 의한 적수를 뜻한다.

- 비업무용 동산 :
- 서화 · 골동품
 - 비업무용 자동차, 선박, 항공기
 -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시설물 및 부속설비
 - 기타 비업무용 동산

III. 조세감면규제법상 비업무용부동산

1.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

-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양도일 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. (매매사업용 부동산 포함)
- 위의 것 외에 비업무용 부동산의 종류와 범위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과 같습니다.

2. 비업무용으로 보지않는 부동산

-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.
- 1년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한 건축물이 소실 · 철거 · 도괴됨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 경우, 소실 · 철거 또는 도괴된 날로부터 2년(자진철거는 1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.
- 1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으로서 휴업 · 폐업 또는 이전으로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된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.
-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
- 위의 것 외에 기타 부분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과 같습니다.

3.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내용

- 법인이 처분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.

※ 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감면유형

- 과산선고에 의한 처분시 비과세
-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
-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시 비과세
- 대도시안의 공장시설 지방이전시 면제
- 수도권안의 본점, 주사무소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시 면제
- 중소기업간의 통합시 면제
-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대한 면제
- 지정산업 또는 기업합리화 기준에 따른 면제
- 지정산업 또는 기업합리화 기준에 의한 합병이나 자산양수로 인한 불용자산을 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도시 면제
-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

-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에 대한 면제
-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
-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감면
-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면제
-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감면
- 수도권안의 공장을 수도권안의 공업단지 및 공업 지역으로 이전시 면제
-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면제
-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면제
-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시 면제
-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감면
-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면제
-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면제
- 기숙사 건설용지로 양도시 면제

IV. 자산재평가법상 비업무용 자산

1. 비업무용 자산의 종류와 범위

-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
-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. 다만,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자산은 제외

-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양수한 자산. 다만,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자산은 제외
- 재평가일 현재 미수복지구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
- 기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업무 무관 자산(비업무용 부동산 포함)

2. 비업무용 자산에 대한 규제 내용

- 기업이 보유하는 비업무용 자산(부동산 포함)은 자산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자산재평가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.

※ 자산재평가로 얻는 기업의 이익

- 감가상각비를 적정히 계상하여 고배당, 세금증과 임금인상 압박을 완화함.
- 자기자본 비율 등 재무구조개선으로 은행여신에 필요한 신용을 강화함.
- 자기자본 증가에 따라 직접금융(주식발행) 확대와 기업공개를 촉진함.

〈다음호 계속〉

廣 告

설비 기자재 광고라면

광고효과만점!

月刊 設備工事

문의
461-4167~9